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대한 수렴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과 절차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육환경평가서 관련 의견을 요청(안 17조제1항)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에게 관련 의견(법 제6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나. 해당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관련 의견의

결과를 제출(안 제17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의견 또는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법 제6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과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과”로,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의견 또는 검토”로, “검토의견을”을 “결과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u>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u>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 ----- ----- ----- ----- ----- <u>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의 관련의견(법 제6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과 법 제13조제1항</u> -----.
② <u>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장과</u> ----- ----- <u>의견 또는 검토</u> ----- ----- ----- <u>결과를</u>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541